

#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7월 16일부터 100일 간 2인 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일시 전환하여 본격 시행한다.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한 200여 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락, 끼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의 39%(376명)를 차지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인력의 80%를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 패트롤카 27대를 신규 투입하여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순회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독을 요청한다.

공단은 이번 긴급대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본부장 및 실장급을 권역별 대응 책임자로 삼고 추진사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긴급대책 추진기간 동안 산재 사고사망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재예방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 공정성 침해하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요구하지 못해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